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8일, 이학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학영의원)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 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느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인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 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 가능

○ 중대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신규

모집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이용자는 사업자 변경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이탈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생겨 효과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하여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① 신규 모집 중단 기간의 상한 설정 검토 필요, 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체화 필요, ③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문구를 정보통신망법¹⁾의 규정을 참고하여 명확화 필요, ④ 규제 실익이 부족한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 필요, ⑤ 침해사고 위반 사항 발생 행태를 감안한 금지행위 규정 내용의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에 의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아 신중 검토 필요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

-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침해사고 발생 행위’ 문구 중 침해사고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감안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함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제3자에 의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
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아 신중 검토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